

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	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
3	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4	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	10
5	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	13
6	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6
7	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9
8	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	22
9	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	25

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-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설치 근거 등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비상설화함(안 제3조제5항)
- 다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정비

- 1) 변경: 회의안건 부치는 권한 및 회의소집 권한(안 제2조·제7조)
- 2) 삭제: 위원의 위촉 해제, 위원 임기(현행 제4조·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4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8. 16.~9. 5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
- 회의안건, 회의소집 권한의 변경, 위원의 위촉 해제, 위원 임기 조항의 삭제 등 비상설화에 따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의 2항에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
-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하는 데에는

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
- 기후위기 등 새로운 재난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과거의 공공기관 중심의 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관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민관협력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.
-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-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을 정함
(안 제4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9. 18.~10. 10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
-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과장)

- 공영주차장 내의 장기불법주차, 주차구역에서 상행위·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령 범위에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주차 거부금지 예외사유 확대함(안 제4조)

- 1)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·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
- 3) 취사·음주·흡연, 폐기물 투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
- 4)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
- 5)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등

나.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변경 등 정비(안 제2조의2·제2조의3·제15조·제2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주차장법」 제8조·제8조의2·제10조·제13조·제15조·제17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9. 15.~10. 5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
- 캠핑 열풍으로 캠핑용 차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법규준수 의식은 이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장기 알박기 차박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피서철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따른 캠핑장 신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될 것임.
-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과장)

- 「도로교통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·별표)

- 1)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·보관 비용의 산정기준

나. 「도로교통법령」 재기재 또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항 삭제함
(현행 제2조·제4조·제5조)

- 1) 차량의 견인: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
- 2)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: 시행령 제23조, 시행규칙 제24조

3) 대항비용의 지급: 법 제35조제6항, 시행령 제15조·제18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9. 15.~10. 5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도로교통법」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
- 현재 거창군은 견인지역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·제33조 또는 제34조 위반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교통위험을 유발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지역 구분없이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
-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건축과장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「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2005 2. 25.)하였으나, 법령 개정(2014. 1. 17.)으로 군수가 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자연보전권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, 별표 20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9. 15.~10. 5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(2014. 1. 17.)으로 군수가 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폐지가 늦은 것으로 향후 조례 정비에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됨.
-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체육시설사업소장)

- 「스포츠클럽법」이 제정(시행 2022.6.16.)되어 「생활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제정된 「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」는 폐지하고,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을 신설함(안 제8조·별표)
- 나. 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신설함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1) 「스포츠클럽법」 제13조·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 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다. 예산조치: 2023년 예산 145,000천원 확보
- 라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- 마. 기타사항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7. 14~8. 4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붙임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9. 18.~10. 10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스포츠클럽법」이 제정(시행 2022.6.16.)되어 「생활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제정된 「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」는 폐지하고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안 제8조제2항제8호의 지원대상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추가하고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- 그러나 신설되는 제16조의 1항과 2항은 법령 중복 재기재 사항으로 조례에 기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
○ 그 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체육시설사업소장)

-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「스포츠클럽법」이 제정·시행(2022. 6. 16.)되면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군의 스포츠클럽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(안 제15조)

- 1) 근거: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
- 2) 감면대상 및 감면율

가) 지정스포츠클럽: 100분의 80

나)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: 100분의 50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스포츠클럽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5. 3.~5. 24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면서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
- 지정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의 감경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-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에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에 대한 감경규정이 있고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되어 있음.
-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감경규정과 감경기준을 2항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
- 그 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
출연 동의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산림과장)

-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출연개요
 - 근거법령 :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 - 대 상 :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(이사장 구인모)
 - 사 업 비 : 240백만원(출연 예정금액)
 - 2024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 : 백만원)

사업기간	2023년 예산액	2024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균 특	도 비	균 비	기 타
2024년	240	240	240			240	

※ 2023년 출연금 240백만원(2023년 대비 동결)

- 사업내용

-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217백만원
(인건비 198백만원, 운영비 19백만원)
-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전문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:
23백만원

○ 부서의견

-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(재)거창화강석
연구센터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○ 2010년 구매한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빈도 증가로 유
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입을 통한 자생력 확보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규 및 조례
-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- 관계법령 : 붙임 1
- 출연 기관현황 : 붙임 2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출연안은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에 따른 것으로
- 화강석 연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애로사항
지원,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지원, 석재원산지 검증 등 지역
화강석 산업에 있어 꼭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되며

-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0. 11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0. 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과장)

-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『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』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위싱사업단에게 『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』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 탁 명 :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운영

나. 위 치 :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6-6번지

(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위싱 사업단 사업장 지내)

다. 위탁사무

-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시설 운영·관리

- 다회용기 세척장 시설 운영
- 다회용기 세척물품 및 차량 운영
- 다회용기 및 운영물품 운영

○ 다회용기 대여 및 회수, 세척, 공급 운영 등

라. 위탁기간 : 3년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
마. 위탁사업자 : 경남 거창지역자활센터(센터장 신말순)

→ 자활근로사업 에코워싱사업단 연계 추진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이 가능

바. 소요예산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

○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등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기존에 일부 세척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집 식판 등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(에코워싱사업)에 위탁 시행 함으로써, 자활근로 활성화뿐만 아니라 1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
나. 관계법규

-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6조
- 「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 제8조
- 「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21조의3
- 「자활사업안내(I)」 지침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- 다. 그간 추진현황
- 2023. 3. : 거창군↔거창지역자활센터↔장례식장 업무협약 체결
 - 2023. 10. : 세척시설 및 다회용기 등 시설 확충 완료
- 라. 향후계획
- 2023. 10. :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 - 2023. 12. : 위수탁 협약 체결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동의안은 「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」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게 『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』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현재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코워싱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운영비와 인건비 등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없으며 『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』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위탁운영 물품은 확보된 상태임.
- 거창군↔거창지역자활센터↔장례식장 업무협약이 2023년 3월에 체결되어 있어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